

# ADA 및 아동 복지와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정의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미국 장애인법)

**동반자:** 타이틀 II 및 섹션 504와 관련되므로 가족, 친구 또는 아동의 복지 서비스를 구하거나 받고자 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CYF:**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아동 청소년 가족부)

**장애:** ADA 및 섹션 504는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주요 생활 활동에는 자기 관리, 수작업 수행, 호흡하기, 말하기, 걷기, 읽기, 학습하기, 집중하기, 보기, 듣기, 먹기, 잠자기 또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요 생활 활동에는 면역 체계, 소화기, 장 또는 방광, 신경, 뇌 또는 생식 기능 등을 포함한 신체 기능의 작동도 포함됩니다.

**섹션 504:** 1973년 Rehabilitation Act(재활법) 섹션 504는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연방 법률입니다. 섹션 504에는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II:** ADA 타이틀 II는 자격을 갖춘 장애가 있는 개인이 공공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해당 기관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타이틀 II에는 아동 복지 기관과 법원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 책임

- 당국과 직원들은 DCYF와 관련된 장애를 가진 부모와 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참여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 방침, 절차를 합당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 DCYF와 직원들은 부가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청인, 참가자, 대중 및 동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CYF와 직원들은 개인이 가진 장애에 따른 추정을 받지 않는 개인화된 사례 제공을 계획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국은 Washinton 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들이 DCYF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ADA 편의시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필요한 경우, 360-480-7230 번으로 ADA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거나 [dcyf.adaaccessibility@dcyf.wa.gov](mailto:dcyf.adaaccessibility@dcyf.w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ADA 타이틀 II 및 섹션 504에 따른 기본 원칙

### 개인화된 처치.

장애가 있는 개인은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사례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안전하게 양육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개별 평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021 Washington 대법원 판결 M.A.S.C. 에서 개인화된 처치가 강조되었습니다.

**예시:**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경우, 부모의 행동 및/또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단순히 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전 위협으로 나열되거나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 FAMILIES**

###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는 장애가 없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아동 복지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아동 복지 기관은 합리적인 수정을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합니다.

#### a. 합리적인 수정

합리적인 수정을 제공한다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얻거나 동일한 혜택을 얻기 위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DCYF는 다른 부모에게 제공되는 것과 다른 강화되거나, 추가되거나, 보충된 지원,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Washington M.A.S.C 판결은 지적/발달 장애 또는 기타 유사한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부모를 위한 합리적인 수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시 1:** 양육 수업이 제공되고 intellectual disability(지적 장애)가 있는 부모가 다른 교육 방법이 필요하거나 반복 및 연습을 위해 더 많은 교육 시간이 필요한 경우 ADA에 따른 합리적인 수정에 따라 기관은 부모에게 필요한 시간 연장 및/또는 교육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시 2:** 외상성 뇌 손상 또는 지적/발달 장애를 포함한 기타 신경학적 질환과 같은 인지 장애가 있는 부모는 개인의 목표를 계획, 모니터링 및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 과정이나 정신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나 프로세스는 종종 실행 기능이라고도 하며 주의력 제어, 작업 기억, 억제 및 문제 해결과 같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실행 기능 결함을 겪고 있는 일부 개인은 이해를 돕기 위해 회의 및 청문회 중에 필기 또는 실시간 자막 생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 제공은 합리적인 수정으로 간주되며 ADA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려됩니다.

#### b. 효과적인 의사소통

DCYF는 인지 장애가 있는 부모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ADA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및 처리 장애가 있는 개인이 장애가 없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말하거나 쓴 내용을 이해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수화 통역사, 필기자, 쉬운 언어 사용 등과 같은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 복지 기관은 개인이 요청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개인은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유형의 지원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DCYF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서비스의 예로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 필기자, 실시간 자막 생성, 접근 가능한 전자 및 정보 기술, 서면 자료, 보조 청취 장치 또는 시스템, 오디오 녹음, 점자 자료, 대형 활자 자료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제공은 상황, 참여자 수, 토론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이나 서비스의 유형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관련된 의사소통의 성격, 길이 및 복잡성; 그리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가 관련된 사례 회의의 경우 수화 통역사를 직접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 날짜나 주소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의 경우 손으로 쓴 메모나 텍스트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메모 작성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은 매우 간단한 대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화는 그 자체로 독특한 언어이며 영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화를 사용하는 개인은 서면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2:** 사회 복지사와 부모 간의 회의에는 필기자 제공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가족 팀 결정 회의, 공유 계획 회의 등과 같은 보다 복잡한 회의에는 실시간 자막 생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정이나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개인과 관련된 사례에 대하여, DCYF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360-480-7230번으로 전화하거나 [dcyf.adaaccessibility@dcyf.wa.gov](mailto:dcyf.adaaccessibility@dcyf.wa.gov)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십시오.